
입 법 정 보

2016-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6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토교통부)	7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9
5.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	10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0
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1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12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13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15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15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6
1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6
1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7
1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8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9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20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0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0
2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21
21.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문화관광부)	22
2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3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4
2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4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2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25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26
2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7
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8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9
31.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9
32.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29

3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30
3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0
35.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1
36.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2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3
38.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4
3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4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4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5
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5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6
4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7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7
4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4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48. 치과의사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41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42
5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42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42
5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43
5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3
5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3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4
5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44
5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5
59.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5
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46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47
62.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48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49
6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고용노동부)	50
65.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52
6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54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54
6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55

6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55
7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5
7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6
7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6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7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57
7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57
7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58
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59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59
7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60
8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61
8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62
8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4
8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5
8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6
85.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국토교통부)	66
8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6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67
8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9
8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국토교통부)	69
9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토교통부)	70
91. 「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70
9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인사혁신처)	71
9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안) (인사혁신처)	72
94.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일부 개정령(안) (인사혁신처)	72
95.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73
9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74
9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75
9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75
99.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75
1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76
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78
1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8
10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0

1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82
10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2
1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2
10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83
10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4
109.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4
110.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86
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7
1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87
1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88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89
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89
1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91
118.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92
119.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92
120.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3
121.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93
12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94
12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94
1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94
1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96
1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97
1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98
128.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00
1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1
1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02
1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03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1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104
13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05

정부입법예고 (2016.05.21.~05.31.)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5. 21. • 마감일자 : 2016. 05. 27.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의 폐지 및 일반군무원 등으로의 통합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등)

1) 기능직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에 통합함으로써 군무원의 구분을 일반군무원과 별정군무원으로 조정함.

2) 직무특성과 인사관리 방식이 유사한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 하나로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임기제)'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군무원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5조,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1)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한 직위에 적격자를 장기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

용기간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하구둑 등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
(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안 제11조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안 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안 제22조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5.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관리청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정비보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마의 출입통제구역 및 지정주체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6호)

- 나.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 관련 지자체 특성 반영(안 제22조제1항제8호)
- 다. 안전정보 내용 및 고지방법 규정 위임사항 변경(안 제25조제4항)
- 라.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명령 미 이행시 운영정지(안 제27조제4항, 안 제44조)
- 마. 변경된 직제반영(안 제43조제1항)

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

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이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 집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제1항)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제2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제34조제3항 및 제4항)

- 1)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2)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3)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인사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성과·역량에 따른 임용 원칙 명시(안 제26조)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 계급·직급 또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사정보 관리 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2항 신설)

채용시험·승진·임용·성과평가 및 인사기록 등의 인사정보를 기록·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51조)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 상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직가치 실천 의무 명시(안 제55조의2 신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사. 조부모·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안 제71조 제2항제5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아.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 해제 시 심사절차 명시(안 제73조의3제3항 신설)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려는 경우 성과심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과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직무성과·역량·태도 등을 심사하고 심사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현지실사와 그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법의 규율대상을 ‘묘’ 까지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 1) 목적 규정에 ‘묘’ 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
- 나.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 1)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다. 유통 묘의 품질표시(안 제43조 및 제44조)

1)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라.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안 제47조)

1)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묘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는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도록 함.

1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보증·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종자검정 실시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1)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

나.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안 제54조제1항)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종자검정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자산업법으로 도입

다. 종자검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1항6의2)

1) 수수료 징수사무에 ‘종자 검정’ 추가

1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 1)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 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 1)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1)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1)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현재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하려는 것임

2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의 확대(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안 제4조)

1)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에 외국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외국학교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연하여 국내학교법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추가함.

2) 외국학교법인과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나. 국내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공동 운영 허용 등(안 제5조의2 신설)

1) 국내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다.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안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제11조 제2항 신설)

1)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거나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대학)의 내국인 정원을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외국교육기관 또는 일반 학교로 전학

할 수 있도록 함.

라. 회계처리 규정 추가(안 제12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외국학교자법인 또는 합작외국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해당 회계 외의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시정명령의 대상 추가 등(안 제17조)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안 제18조제4항 신설, 안 제20조)

1)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후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21.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문화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자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2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부적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업무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중복규제 및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채종립안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은 중복규제로서 이를 폐지함(안 제19조제5항)
 - 나.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의 기술지도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제1항)
 - 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 라. 임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안전성 확보 등 임산물 유통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폐지함(안 제40조)
 - 마.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의 제정(‘09.6)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안 제48조)
 -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2)

2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5. 27.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활용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6. 05. 24. • 마감일자 : 2016. 05. 3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생활보호)가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 급여의 종류별로 준용 규정 신설.
 - “제5조에도 불구하고” 를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로 개정.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5. 30.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2.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심의·조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만으로 방대한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신설)
 -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

며,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산점 부여, 이윤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다.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관련 조항 정비(안 제57조제2항 및 제5항)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의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의 단서로 규정하여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에게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2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20.

○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함.

○ 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전자수입인지의 위조 변조나 구매자의 고유식별번호 유출을 방지하고, 수입인지를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갖추어 두는 등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신설 (안 제10조)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 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나.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 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1)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2) 완공 후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댐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부과 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금치산 등 등록요건 결여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2년 재등록 금지제한을 폐지하여 이중제재 소지를 해소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등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을 이행하기 위함

3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및 진단 대상의 중복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및 진단결과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함. 또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32. 제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 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가.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이주의 결격사유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소지 제거
- 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의 취득으로 현지이주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지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요건 삭제 및 현지이주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이주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3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중 석면 질병관련 분야 위원 수를 확대하여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석면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의비 등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석면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35.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해양분야(해양수산발전기본법)와 수산분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로 분리되어 있던 해양수산 R&D 근거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현행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 수산분야 이관을 위한 개정을 병행하고자 함

○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

관, 국립·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6.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해양분야(해양수산발전기본법)와 수산분야(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로 분리되어 있던 해양수산 R&D 근거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현행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 수산분야 이관을 위한 개정을 병행하고자 함

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1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중개업의 등록제도 신설(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어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8.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과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단순 자문기관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정비대상 위원회의 설치근거 조정 권고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두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75조제1항제8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

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 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개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 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공사도 포함

나. 항만관련 국제협력 지원 사항 구체화(안 제91조의2 개정)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

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개정)

정부업무 위탁대상 공공기관에 경인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도 포함

4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대상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사후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시장 등이 확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4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7. 04.

○ 「아동복지법」 개정('16.3.22.공포, '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설치

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다.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

4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7. 04.

○ 「아동복지법」 개정('16.3.22.공포, '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법 완화

1) 현행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조제4항)

2) 현행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포함·운영하도록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9조)

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1)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

2)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려는 경우 등 보호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을 퇴소시키도록 함.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안 제26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 시스템에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라. 아동의 안전 교육 관련 교육내용 추가(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653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함.
-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 등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채용자격기준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안 제48조 및 별표10·16)
- 바.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 시 전원조치 구체화(안 제50조의2)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

48. 치과의사전문직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7. 04.
-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 종료('16.12.31일 까지)와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에 따른 자격 인정기준 신설 및 기수련자에 대하여 전문의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가칭) '통합치의학과' 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으로 함(규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 다.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인정 및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 마.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제도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대기전력 분야의 의무제도인 대기전력경고표지 제도는 폐지하고, 효율관리 기자재 라벨표시 의무품목을 최소화하되, 판매업자의 라벨 훼손 방지 노력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영세 판매업자들의 광고표시 의무 위반시 과도한 행정조치를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폐지 및 대기전력 우수제품 개선(안 제18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1조, 제69조, 제76조)
 대기전력 경고표지(의무) 폐지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측정, 신고 등의 규정 조문을 삭제하되, 대기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품목의 효율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에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추가함. 또한, 임의제도인 대기전력우수제품 표시 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저감기준, 측정 및 신고 방법 등의 기존 조항을 정비함.
- 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표시 의무품목 축소(안 제15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최저소비효율 대상제품은 자율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광고표시 의무 미이행시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안 제16조제4항)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판매(수입)업자가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

거조항을 마련함.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불법·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으로 전환·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불법·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법 제21조에 규정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설립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

5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저광물자원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대륙붕 탐사자료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 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간척지 운영위원회 폐지(안 제5조 제3항,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 1) 간척지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삭제

5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안 제5조 제3항, 제7조 제1항~제4항)

1) 도시농업위원회를 정부부처간 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

나.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제4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1조 제3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5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기준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요건)을 법률로 규정

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5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안 제28조)

-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5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투자비용 및 지급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 1)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나. 초지에 설치하는 영구시설물 규모 제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6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영구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규정

59.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의 강화(안 제20조제2항제1호)
 - 1) 총 2회 이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나.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강화(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 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2)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인증기관의 평가 등(안 제29조제3항, 안 제32조의2 신설)
 - 1)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2)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53조의2 신설)
 - 1)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목록,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안 제6조의2 신설)

1)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등록된 농어업경영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정비(현행 제4장 삭제)

1)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가소득의 파악 및 농가 당 소득 격차의 반영이 어려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를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17조의3)
 - 1) 할랄·코셔 등 식품인증 관련 지원을 전담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안 제5조)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련형성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기기간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 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안 제28조 및 안 제31조)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위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함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6. 02.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현행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표(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 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 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9. 5.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함(안 제28조의2)
- 마.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적용대상 사업장을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비하고, 감면 방식 중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33조제4항)
- 사.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적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3조제6항)
- 아. 사업주가 1월 31일까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안 제35조제3항)
-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 차.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9조, 안 제28조의3)
- 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82조)

64. 「산업연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스위스·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인 듀얼시스템을 한국현실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확산 중에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생을 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 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로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1)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2)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제3항)

1) 종전에는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관련 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인 영인과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복제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수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6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6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7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재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

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감독 기관을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7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7. 0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기준 완화 (안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30억 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문화산업에 한하여 5억 원으로 완화

7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 위안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

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15조 신설)

7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거나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안 제6조 및 제8조)

1)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

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안 제7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및 표시 등의 개선을 통해 관련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목재제품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 완화(안 제20조)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함

나. 목재생산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자 벌칙 적용(안 제44조)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형 관련 위

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 가.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 범위 축소(안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

나.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주체 추가(안 제18조)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7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05. 23. • 마감일자 : 2016. 06. 02.

○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유사법인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하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운영의 탄력성·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북지역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등 조정(안 제7조)

5년마다 민북지역 산지에 관한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

나.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한국산지보전협회 산하 소속으로 변경(안 제26조)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

록 되어 있는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산지관리 전문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소속으로 변경 설립함다.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규제 일몰제 적용(안 제30조의2)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80.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4. • 마감일자 : 2016. 06. 03.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제3호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절차 보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해양수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9조)

해양수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의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부는 해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 및 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안 제3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물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81.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4. • 마감일자 : 2016. 06. 03.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제3호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절차 보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9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 산발전위원회의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부는 해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과학기술의 육

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 및 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안 제3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8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4. • 마감일자 : 2016. 06. 13.

○ 가. '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나.'15.12월 「고등교육법」 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다. 이에,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고등교육법 시행령안 별표 4 제2호 다목란)

나. 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함

8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4. • 마감일자 : 2016. 06. 03.
- 가. '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 '15.12월 「고등교육법」 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 이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또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 서식(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인정기관 지정서)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의료인 양성 학교의 평가·인증절차 조항 신설(규정안 제2조의2)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인 양성 학교”)의 인증심사 최초 신청,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신청, 이의신청, 인증결과 공개 등 절차 조항을 신설함
- 나.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결과를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후단에 신설(규정안 제3조제2항 후단)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함
- 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용어를 순화(구비서류→첨부서류, 날인→서명 또는 인)하고, 서식 디자인 개선(처리절차 도식화, 글자크기, 글꼴, 색상 등) 및 서식용지를 변경(보존·일반용지→백상지)함

8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최근 파리협약이 체결 되는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부담이 강화되고 있어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 주체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안 제14조의2제4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수수료 인하(안 제15조제2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수수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하함

85.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한국감정원법」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8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

- 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 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 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
- 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 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
 - 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제22조)
 - 마. 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조)

- 바. 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조)
- 사.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조)
- 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조)
- 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42조, 제43조)
- 차.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조)
- 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조)
- 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조)
- 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조)
- 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 (안 제67조)
- 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조)
- 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조, 제76조)
- 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 (안 제79조)
- 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조)
- 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조, 제88조)
- 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조)
- 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3조)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조)

8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 에 규정
- 나.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8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9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9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치료·기능성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고 화장품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제한적으로 소규모 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사업화 진출을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전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침복단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당연직 위원(장관→차관)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의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 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 다. 생산시설 설치 요건,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함(안 제 27조)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전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정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5항)

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 마련(안 제31조제4항)

사. 현행 제31조제3항의 청문 규정은 신설된 제4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5항으로 규정 이동(안 제31조제5항)

아. 입주승인 및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1조제6항)

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벌칙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33조, 안 제34조)

9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정(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폐합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

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

9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인)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부터 제32조)
 -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에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종전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94.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령(인)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령의 제명 변경
 - 공무원 인사기록 등에 관해 연관성이 높으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에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안 제39조 및 제41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인사자료의 전자적 제공 및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재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95.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 공무원 소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22조)
 - 「소청절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청구,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소청심사결정서 송부 등 공무원의 소청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공무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내지 제38조)
 -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에서 규정한 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고충심사 결과 처리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함

-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 「소청절차규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9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7. 04.

- 현행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부 직할구조대 외 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시 전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할구조대의 임무를 “대형·특수재난사건의 구조“에서 “대형·테러·특수재난사건의 구조“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
 - 1) 대테러인명구조 활동을 직할구조대의 임무로 명시
- 나.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 설치근거 명확화
 - 1) 필요한 경우에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 삭제
- 다.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관련규정 보완
 -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 신설
 -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9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6. 13.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법 제8조의3 신설) 연간 참여금액 기준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참여 허용금액 기준 등을 마련(안 제9조의6)
- 나.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부적정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9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05. 25. • 마감일자 : 2016. 06.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가. 발주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

99.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05.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근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

금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통합 및 전자적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는 일자를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통지시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함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장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 다.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라. 수집된 보조금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등을 위조·변경·훼손·유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마.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바.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 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00. 이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05.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

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며,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을 조정하는 한편,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8항)

기술자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이를 ‘설계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 확대(안 제8조제1항)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다. 보복행위에 대해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 3)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 제한, 거래단절, 나아가 시장에서의 퇴출 등을 야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이므로 이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어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 2.1점의 벌점을 가산토록 함.

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안 별표 3)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별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관련 누산별점 기산시점 개선
(안 별표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별점 누산점수 산정 기산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법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별점 누산점수 산정에 있어 당해 처분에 따른 별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6. 02.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43호, 2016.3.29. 공포)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신고사실을 피신고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신고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안 제10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함.
- 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안 제10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한다고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1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0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 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의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안 제8조의2)
 -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관리 등 물놀이 시설로 이용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50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 현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0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전년도 관리대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50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
 - 마.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안 제71조의3)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여야 하고, 기술진단의 내용에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
 -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그 밖의 시·군·구 또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검사 등(안 제89조의3)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10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0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 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한편 토사 유출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차~3차 위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법 제10조의3 삭제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위원의 수당·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나.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의 요청 명령 내용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명령 등 내용을 규정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승인 등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복원계획의 내용에는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장기 사업계획,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비용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환경부장관에게 복원계획의 수립을 명령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 등 정비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8조, 제21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52조, 제60조, 제61조, 제70조, 제71조, 제81조 개정)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부담금은 사용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료의 비용범위, 총액, 원인자별 사용료 결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개정)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8의2의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상호·명칭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 등록된 기술인력 등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바.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신설(안 제75조의3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종합대책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대책을 작성·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별 대책의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사. 유역·지방청장에게 복원계획의 승인 등 권한의 위임(안 제81조의 개정)

복원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의 협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유역·지방청장에게 위임

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범위 등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2014년 1월 1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검토기한인 3년이 도래('17.1.1) 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범위,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자격기준,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 등 규제 개선 및 기준일 변경

1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05.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어선과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처벌규정이 동일하여, 무허가어선에 대한 처벌의 실익도 낮고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10.30)에서 양무어선(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몰수하기로 한 한·중 양국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10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6. 10.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통합심사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일정 요건하에 의료기기 허가 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심사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합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해 필요한 절차 반영하도록 규정함

10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6. 10.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결과 통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 외에 식약처 허가시 제출하였던 임상시험자료를 첨부하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안 제3조의4)
 -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심사 절차를 마련함
- 나.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안 제3조제8항제2호나목, 안 제3조의4 제6항)
 - 신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조기도입을 위한 안전성이 확보된 제한적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
- 다. 평가유예제도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이 있어야 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식약처 허가시 제출하였던 임상시험자료도 가능하도록 함

10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25.
-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많은 질병의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새로운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어 그동안 극복되지 못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및 시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임.
- 한편, 지카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생화학 테러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의 정부차원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 필요성이 증대됨. 따라서 증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이하 ‘획기적 의약품등’ 이라 한다.)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10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6. 02.
-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중 시행령에 위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하고자 함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제5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109.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26. • 마감일자 : 2016. 07. 11.
-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장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어 현행화 등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정비(안 제1조)
 -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 제2항)
 -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

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라. 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마.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음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치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실에 포함하며,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세부 설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별도 규정하지 않음)할 필요가 있음

사. 시설·설비 안전기준 신설(안 별표 2)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에 따라 <별표 2> 시설·설비 안전기준에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

110.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면직·해촉 기준 및 결정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배상심의회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도모하고,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제9해병여단이 창설됨에 따라 배상심의회에의 명칭을 변경하며, 배상심의 관련 사무에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나. 배상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도록 함
- 다. 배상심의회 위원의 면직·해촉기준 도입(안 제7조, 제9조)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배상심의회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함
- 라. 배상심의회 위촉 위원의 결정사유 도입(안 제7조,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배상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마. 지구심의회 의 명칭 변경(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 의 명칭을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 에서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 로 변경함

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1 제5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자 함

1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가산금의 가산요율을 인하하고, 부과금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여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및 파쇄잔재물에 대한 인계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적정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 정보의 홍보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제고와 불편을 최소화 또한, 북한의 대남 전단지 낙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에서는 민방위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나 특정 업체의 기술독점 등으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활용이 곤란하고 경보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설계·제조·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규격을 정하여 공동 활용을 통해 누구나 사업 참여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보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민방위사태 또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경보를 전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현행 민방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및 세부사항 위임 규정 신설(안 제 25조제3항, 제5항 신설)
 -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민방위 훈련 홍보 요청시 협조의무 신설(안 제25조제4항 신설)
 - 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제32조의2 단서 신설)
 -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습 및 복구를 하였을 때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
 - 마. 민방위사태 발생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보시설 및 장비 등

-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2조제3호 신설)
- 바.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나.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는 등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7. 06.
-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안전을 상정·심의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안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계약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안 제60조제1항제10호, 제60조제2항)
주민참여 감독공사에 마을공원 공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등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안 제64조의2)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 대상에서 공사 분야 폐지(안 제15조제2항·제6항제2호, 제43조제1항·제5항·제8항·제12항·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제96조제1항단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의 협상계약방식을 폐지하려는 것임.

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6. 16.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 나.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다.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1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5. 27. • 마감일자 : 2016. 06. 07.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는 중요 정책 결정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책자문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폐지하며(법제9조, 제10조, 제11조),
- 해당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진흥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법제7조의 2)
 -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조항 삭제(제9조 ~ 제11조, 삭제)
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조항 신설(제7조의 2, 신설)

118.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6. 05. 30. • 마감일자 : 2016. 06. 09.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119.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05. 30. • 마감일자 : 2016. 07. 11.
-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120.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5. 30. • 마감일자 : 2016. 07. 11.

-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121.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6. 07.

- 세계적인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과 전략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체계화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1)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둠
- 2)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등에 대한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나. 과학기술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

문가가 참여함

다.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설치 (안 제4조)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함

12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6. 07.
-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따른 지원체제 체계 마련 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성과평가혁신관, 성과평가혁신총괄과, 성과평가과를 폐지하고, 연구성과평가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12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6. 20.
- ' 16.5.18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4개의 총리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20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96조제1항)

1)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5천만원으로 효과적인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5항·제6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

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거나 크거나 영업정지시 대형 법
인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영세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
래법, 공인회계사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
입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9조
제8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1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
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
련하기 위함
-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21조제1항~제2항)
현행 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천만원, 5천만원
으로 상향하여 징벌 효과를 개선하되, 검사 거부·방해 등 현행 5백
만원 또는 2천만원 부과사항 중 다른 법에서重하게 제재하는 사항(5
천만원)은 법률간 제재 형평,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함
- 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14조의2제2항)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부
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다. 제재시효제도 신설 (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하여,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안 제21조제5항)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13조제7항)

퇴직한 은행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은행법(제54조의2)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中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1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과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

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요구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라. 퇴직자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35조제6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5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1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2항)

1) 금융지주회사법은 36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또는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금융지주회사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금융지주회사법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20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이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은행지주(40%)와 비은행지주(20%)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既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2조제4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128.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수도 전체의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합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영업행위의 기준 및 금전제재의 수준을 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며,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기존 중앙회장의 직무를 담당할 상임임원 선임을 통해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한편,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간소화(안 제23조)

-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다.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
한 여신거래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함

1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6. 07.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
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
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문
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나.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
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를 도입하여 지자
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바.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 공공법인·공법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및 사용료 감면(안 제13조, 제17조)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자.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카. 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익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1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2항)
- 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5항)
-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의2)
- 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마. 금융위원회가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권한을 신설하고 동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3)
- 바.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
- 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4항)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으로 고려
-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1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안 (2015. 9. 2.)에 따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전환하고 금전제재를 활성화하는 등 은행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임직원 제재 관련(안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현행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중 선택적 부과를 임원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 병과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5년(공소시효가 5년 초과시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5조의3, 제65조의8)

과징금 부과비율 한도를 현행 2% 10%에서 각각 5% 30%로 상향 조

정하되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 금액의 40%에서 100%로 조정하고,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가산금 징수기간에 대한 상한을 각각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9조)

과태료 부과한도를 은행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현행 은행에 대한 1천만원 3천만원 한도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임직원 과태료를 은행 과태료로 전환하여 위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34조의3, 제52조의2, 제67조)

은행법 개정(법률 제14129호, 7. 30. 시행)으로 자본금 감소가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별칙 사항으로 개정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불공정영업행위금지의무 준수대상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으로 일원화함.

13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6. 05. 31. ● 마감일자 : 2016. 07. 11.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